



# 서울특별시 중구



수신 내부결재

(경유)

제목 도시관리계획(명동지구단위계획:공동개발)변경(경미한사항)결정고시

1. 2015.6.8일자 제4차 중구 도시·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결과(원안가결)와 관련입니다.
2.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5-351호(2005.11.17)로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-405호(2014.11.27)로 변경결정 된 『명동관광특구지구단위계획구역』 내 공동개발 해제 및 지정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제안사항은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30조 제5항,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 제4항, 『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』 제68조 규정에 의거 경미한 변경(공동개발)에 해당되어,
3.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 제5항, 『토지이용규제기본법』 제8조 내지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 하며,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32조 제5항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따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결정고시로서 지형도면고시에 갈음코자 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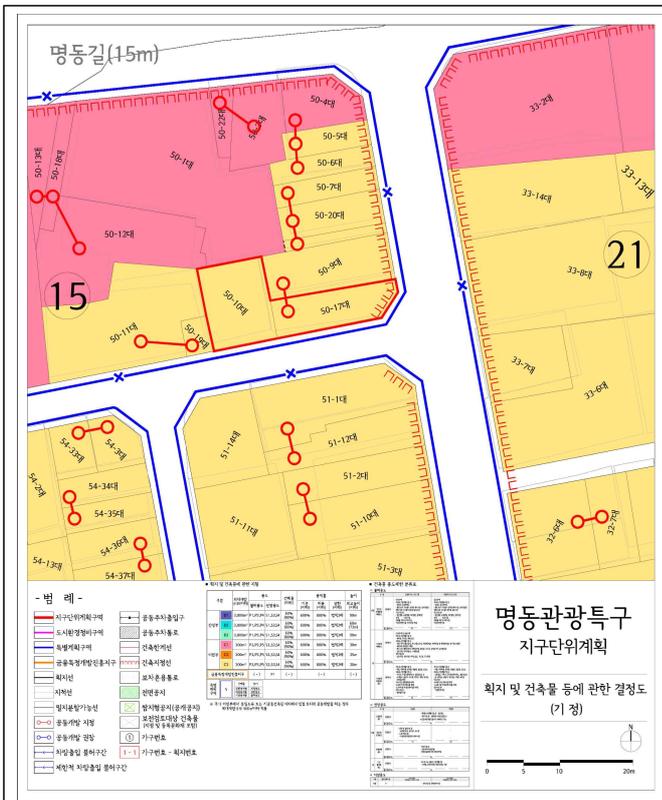
## ○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결정(변경)조서

### 1) 가구 및 획지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(변경)조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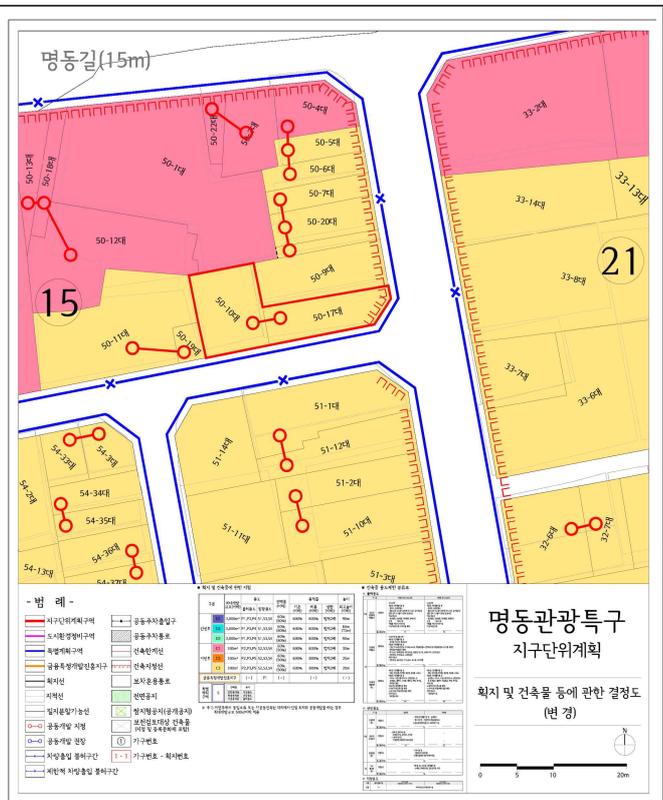
구분	가구 번호	획지 번호	위치		면적		획지(공동개발) 계획	비 고	기공동 건축	동일 소유
			동명	지번	필지	공동개발				
기 정	이 면 부 15	-	명동2가	50-9	108.4	191.0	공동개발지정	-		
			명동2가	50-17	82.6					
			명동2가	50-10	101.2	-	-			
변 경	이 면 부 15	-	명동2가	50-9	108.4	183.8	공동개발지정	-		○
			명동2가	50-17	82.6					
			명동2가	50-10	101.2	-	-		○	

### 2) 가구 및 획지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(변경)사유서

구 분	변 경 내 용	변 경 사 유
명동2가 50-9,10,17호	공동개발 해제 및 공동개발 지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소유자가 상이하게 명동2가 50-9, 50-17 공동개발인 것을 해제 하고 동일한 소유자간 명동2가 50-10,50-17호 공동개발 지정하여 원활한 개발이 가능토록 변경</li> </ul>



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(기정)



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(변경)

4. 고시방법 : 시보게재
5. 고시일자 : 2015.6.25(목) 예정
6. 행정사항
  - 시보게재의뢰 : 서울특별시(시민소통담당관)
  - 변경결정통보 : 서울특별시(지구단위계획과), 중구청(건축과, 토지관리과, 명동), 주민제안자

붙임 : 고시문 1부. 끝.

주무관 **송병순** 지역개발팀장 **이정일** 도심재생과장 **최영수** 도시관리국장 **06/16 이진형**

협조자 주무관 **임경일**

시행 도심재생과-6846 ( 2015.6.16 ) 접수 ( )  
 우 100-701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17(예관동) 본관6층 / http://www.junggu.seoul.kr  
 전화 3396-5784 /전송 02-3396-4342 / finetree@junggu.seoul.kr / 대시민공개